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71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3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4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자연재난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국회는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함.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국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기후 주류화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후정책 관련 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함.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Ⅲ. 검토의견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간사위원을 현행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u>국무조정실장</u> 이 된다.	⑥ ----- ----- ----- <u>환경부장관</u> -----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고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탄소중립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기능에 대하여 정부 내에서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¹⁾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현행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의 환경부장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EU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 기후(완화, 적응) 및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생태포용전환부), 독일(경제기후보호부), 영국(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²⁾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1) 에너지경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2024.6.19.

2) 국회 미래연구원의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2025.5.)에 따르면 에너지와 기후정책이 통합된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 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부처를 기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 프랑스, 미국, 일본의 경우 개편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7%에서 6%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 현황]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행정 조직	부총리겸 경제기후보호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생태포용전환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 Net Zero) 기후변화내각위원회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본부장 총리, 부분부장 관방, 환경, 경제산업대신 (자원에너지청)
법	연방기후보호법(2019) 2021년 2023년 개정 수립주체연방정부	기후변화와 회복탄력성법	기후변화법(2008) 2019년 개정 5년단위 탄소예산	지구온난화대책추진 법(1998) 2021/2022 개정
위원 회	독립적인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 이니셔티브 보고서 작성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 프랑스 기후 고등위원회	독립적인 법정기관 기후변화위원회	각 부처 산하에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 정부, 민간, 학계의 협력 촉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기후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과 위원회 개편방안(2025.4.8.)

다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사항이고, 기후환경 업무는 여러 기능 및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국무조정실 주관 정책조정체계³⁾와 개편된 기후환경부 주관 정책조정체계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3) 탄소중립·녹색성장은 범정부적인 아젠다로서 기후·환경 측면과 에너지·산업 측면의 상호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각 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을 간사로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며, 기후환경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제2208373호)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